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32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최혁진 · 김우영 · 김준혁
김재원 · 권칠승 · 염태영
이건태 · 이성윤 · 송재봉
서미화 · 손 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는 것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법인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4. 법인의 대표자, 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행위가 법인의 조직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인이 이를 묵인한 때
 5. 법인이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법인이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인이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주무관청이 관리하며, 유사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제38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한 조사 또는 감독 절차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7條(法人的 事務의 檢査, 監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第37條(法人的 事務의 檢査, 監督)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는 것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법인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法人이 目的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設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4. 법인의 대표자, 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행위가 법인의 조직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인이 이를 묵인한 때
5. 법인이 「대한민국헌법」 제

20조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법인이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의2(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신 설>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 ~
③ (생 략)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법인이 제38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u>
<u><신 설></u>	⑤ <u>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주무관청이 관리하며, 유사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u>